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제정과 주요내용

I. 들어가며

2014년 6월 20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과로사 등’의 문제와 관련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하 ‘과로사방지대책법’이라 한다)이 표결·처리되면서 법률로 성립되었다. 일본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과로사와 과로로 인한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이들 문제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하지만, 과로사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사회각층의 과로사에 대한 문제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국가 또한 과로사 등이 본인은 물론 유족(가족)뿐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커다란 손실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과로사방지대책법이 비록 과로사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규율을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대한 사항을 최초로 입법함으로써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¹⁾

일본의 산업화나 경제발전과 유사한 방향을 가지고 전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로사 등에 관한 문제는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장시간의 근로, 유교적 문화에 바탕을 둔 사무·근로환경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면을 가진다. 오히려 근로환경에 관한 각종 국제지표를 살펴보면,²⁾ 일본의 경우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환경이 더 열악하여 과로사 등의 문제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로사에 대한 법적인 개념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³⁾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일본의 과로사방지대책법의 제정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과로

1) 교토통신, “日 ‘과로사’ 방지대책법안 성립...올해 11월부터 추진”, 2014.6.21.

2) 2014년 기획재정부가 OECD dataset에 근거하여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로자 평균 근무연수 5.3년으로 가장 짧고, 23.2%가 임시직 종사자로 고용 불안이 최고수준이다. 또한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연 2,092시간으로 최장 수준이며, 저임금계층 비중은 25.2%로 최고, 임금불평등도는 4.9배로 최악의 상황이다. 홍종학, “한국, 최악의 근로환경 속에서 신음 중”, 국회의원 홍종학 의원실 제공, 2014.4.1.

3) 한광수, “산재보험법상 과로사 인정기준과 범위”, 노동법논총 제17집, 2009, 77면 이하.

사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II. 입법 배경

1. ‘과로사’ 개념의 등장과 과로사 라인의 제정

과로사방지대책법의 제정은 최근의 그리고 단기간의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사회에서는 과로사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였고, 과로사를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문제 나아가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특히, ‘과로사라인’은 법 제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969년 일본의 한 젊은 신문발송부 사원이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를 ‘직장돌연사(occupational sudden death)’라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사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사원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는데, 이것이 최초의 과로사 사례로 보고 있다. 과로사라는 용어 자체는 1982년 3명의 의사가

가 저술한 과로사(かろうし)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⁴⁾

이러한 과로사의 문제가 확산되게 된 배경에는 1980년대 들어 ‘오사카 과로사 문제 연락회’ 등의 변호사그룹이 활발한 상담활동을 하면서부터이다. 당시에 과로사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긴 하였지만, ‘과로사’ 자체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즉, 당시의 기준에 따르면, 과로가 피로의 축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사망당일에 갑자기 평소의 3배 이상의 일을 강요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로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더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과로자살’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고의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노동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규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로자살’이란 과로가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실무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과로)이 원인은 아니다’라는 이론이 수년 동안 지배해오고 있었다.

산업재해를 좁게 인정하는 실무의 태도를 변화시킨 것은 장애를 입은 근로자, 피해자의 유족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이었다.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를 부정하는 노동 기준 감독청의 판단’에 의구

4) 남근욱, “과로사 인정 기준”, 영남법학 제12집 제1호, 2006, 116면. 1991년 ‘과로사’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처음으로 신문지상에서 ‘과로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심을 갖게 된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은 과로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수집하고 도도부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유족들은 이의제기가 거부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장기간의 법정투쟁이었으며,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상호교류와 지원을 위한 ‘전국 과로사생각 가족 모임’을 결성하였고, 사망의 원인이 과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 다수의 판결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결은 행정청의 결정을 달리 판단하였으며,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 과로 판단의 기준을 개선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과로의 판단기준을 정량화하여 작성한 것이 바로 2001년 제정된 ‘과로사 라인’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에는 ‘더 이상 일하지 말라’라는 기준이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과로의 공식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이다. 다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과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후생노동성이 정한 ‘과로사 라인’이다.⁵⁾ 단적으로 말하면 과로사 라인이란 “어느 정도 오래 일했던 사람이 뇌와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경우, 과로에 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한 달에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연속하여 실시하고, 일시적으로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거나 하면 ‘과로사 라인’ 기준상 과로라고 판정한다.

한편, 1999년에 이르러 ‘과로자살’에 대해서도 정신이상 상태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운용이 변경되었다. 과로사 라인 중에는 ‘과로로 인해 정신장애에 이른 경우에는 과로자살 등으로 인정’하는 또 다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⁶⁾

2. 법 제정을 위한 노력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약 30여년에 걸쳐 ‘과로’의 기준이 만들어 졌고, 과로의 기준을 변경하자는 운동이 ‘과로사 라인’이라는 기준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아가 한 때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과로가 원인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국가가 자살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로에 의한 것이라는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과로에 의한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

2008년 경부터 사회 곳곳에서는 「과로사

5) 후생노동성, “心疾患の災認定—「過死」と災保—(全版)” 참조.

6) 후생노동성, “血管疾患及び血性心疾患等(負傷に起因するものを除く°)の認定基準について(平成13年12月12日付け基 第1063).

방지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2011년 11월에는 정식으로 ‘과로사 방지 기본법 제정 실행위원회’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였으며, 당초 실행위원회 등이 요구하였던 법률의 명칭이나 내용도 많이 변경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과로사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과로사방지대책법이 제정되었다.

Ⅲ. 주요내용

1.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등

일본사회 내에서 과로사 문제에 대한 오랜 다툼은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과로사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된 것은 중요한 변화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번한 과로사 등의 발생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본인은 물론 유족·가족뿐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큰 손실임을 인정하게 되었다.⁷⁾

이러한 과로사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방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은 과로사방지대책법의 목적조항에서 잘 드러나 있다. 법 제

1조에서는 “최근 국가(일본)에 있어서 과로사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및 과로사 등이 본인은 물론 그 유족 또는 가족뿐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커다란 손실임을 감안하여,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정함으로써 과로사 등의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과로사 등이 없이 일과 생활을 조화시켜 건강에 충실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과로사방지대책법은 과로사 등의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업무가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제도 구축에 있어 기초가 될 기본이념을 천명하고 있다. 먼저, 과로사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현실 파악이 있어야 하므로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의 실시’가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과로사 등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과로사 등의 방지 또는 대응책의 마련은 현실적 당사자인 국민의 자각과 인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과로사방지대책법은 과로사 등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자각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7)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안(안 제25호)(중의원 제출)요지’.

과제이자 기본이념임을 밝히고 있다.

셋째, 과로사 등의 방지대책은 어떤 하나의 부분영역이나 지역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법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기타 관계자가 상호 밀접한 연계 아래에서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과로사방지대책법은 과로사 등의 문제에 대해여 본인 또는 유족·가족 등이 국가 또는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법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사업주는 일정한 책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국가는 과로사방지대책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과로사 등의 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동 법상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와 협력하고, 과로사 등의 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한 과로사 등의 방지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과로사 등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표 1〉 과로사방지대책법의 체계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국가의 책무 등
제5조 과로사 등 방지 계발월간
제6조 연차보고서
제2장 과로사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대강
제3장 과로사 등의 방지대책
제8조 조사연구 등
제9조 계발
제10조 상담체제 정비 등
제11조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4장 과로사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대강
제5장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법제상의 조치 등

(1) 과로사 정의 규정

종래 일본에서도 과로사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단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었다. 즉,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7조), 근로자가 입은 재해(병, 장애, 사망)가 ‘업무상’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것, 즉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은 것과 재해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재해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임을 요구하는데, 업무와 상병 등 사이에 요구되는 이러한 인과 관계를 실무에서는 ‘업무기인성’이라 하는데,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과로사’의 개념이 사실상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과로사방지대책법은 그동안 법률외적으로 통용되던 ‘과로사’에 대한 개념을 법의 범주로 포섭하였고, 그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로사를 정의하고 있는데, 과로사란 “업무의 과중한 부하에 따라 뇌혈관질환 혹은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사망 또는 업무에서의 강한 심리적 부하에 따라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한 자살로 인한 사망 또는 이들의 뇌혈관질환 혹은 심장질환 또는 정신장애”이다. 즉, 과로사의 정의를 “업무의 과중 부하가 원인으로 뇌·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 강한 심리적 부담이 원인으로 정신 장애로 인한 자살”로 정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할 수 없는 자도 많은 경우 과로사 등에 따라 손해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로사방지대책법상 조사연구의 대상으로서 ‘과로사’는 매우 폭넓게 파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강(大綱)

정부는 과로사 등의 방지대책을 효과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로사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대강’(이하에서는 ‘대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방지대책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안(案)을 마련하고, 그것을 정리한 ‘대강’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로사 등의 방지대책의 마련이 사실상 이법의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는데, 대강의 작성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의 후생노동대신은 대강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동시에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과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협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즉 후생노동대신은 대상의 작성과정에서 방지대책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후생노동대신은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대강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강령이 정해진 경우, 정부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대강의 작성의 의무화 된 것은 아니며, 대강의 작성 시기는 2015년 말로 예정되어 있다.⁸⁾

(3)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

과로사방지대책법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8) 후생노동성, “過 死等の防止のための 策にする大綱について” 참조(<http://www.mhlw.go.jp/file/>).

주요 대책으로 다음의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조사연구 등

방지대책 가운데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방지대책을 위해서는 사전작업이라 할 수 있는 ①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② 과로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 ③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④ 과로사 등의 효과적인 방지에 관한 연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법에서는 위 네 가지의 행위를 넓게 ‘조사연구 등’이라 하여 조사연구의 분야를 확정하고 있다.

한편,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과로사 등의 발생사실이나 대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로사 등의 발생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사연구 등의 대상으로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하고 있는데, 업무의 과중한 부하 또는 강한 심리적 부하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등까지 인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 계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을 통해 과로사 등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자각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과로사 등의 방지는 근로자 개인의 영역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도 있으므로, 국민 사이에 널리 과로사 등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과로사 등 방지 계발월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로사방지대책법은 이러한 계발월간을 ‘11월’로 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과로사 등 방지 계발월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실시되도록 힘써야 한다.

3) 상담체제 정비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과로사 등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를 실시하는 체제의 정비 및 내실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과로사 등의 우려가 있는 자와 그 친족 등이 과로사 등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고, 산업 기타 과로사 등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주체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를 비롯하여 민

간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과로사 등의 방지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협의회

과로사방지대책법은 후생노동대신이 대강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법이 요구하는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직이 바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협의회’라 한다. 협의회는 2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로는 업무의 과중한 부하에 따라 뇌혈관질환 혹은 심장질환에 걸린 자 또는 업무의 강한 심리적 부하에 따라 정신장애를 갖게 된 자 및 이들의 가족 또는 이들의 뇌혈관질환 혹은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한 자 혹은 해당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자살로 숨진 자의 유족을 대표하는 자,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과로사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자이다. 협의회의 위원은 이와 같은 자 중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임명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로사방지대책법의 입법과정에서 과로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가족 및 그들을 지원하는 변호사 등

의 민간단체 내지는 조직은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들은 여전히 과로사방지대책법이 요구하는 방지대책의 마련이나 대강의 작성과 관련하여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토대로 한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IV. 평가⁹⁾

과로사방지대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로사 방지대책에 관한 대강의 작성, 방지대책의 마련 및 법제상의 조치 등에 대한 것이다. 특히 과로사 등의 방지대책으로는 조사연구, 계발, 상담체제의 정비 및 민간단체의 활동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과로사 등의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상한에 대한 규제나 과로를 단속하는 새로운 규정을 법률이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로사방지대책법은 과로사 등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규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

9) 川村遼平, “〈きすぎ〉の基準はえられる…過 死等防止 策推進法は完璧か 期待外れか”, 2014. 6. 21. 참조.

적인 부분으로부터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로사방지대책법은 국가의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사 내용에 따라 일본사회에 만연하는 ‘과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책의 수립은 조사연구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법이 조사연구의 주체로 산정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장래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률 제정의 원동력이 된 유족들은 ‘앞으로’의 움직임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베에서는 이미 좀 더 명확한 내용의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거리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책임주체로써 과로사 등의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종전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재판 투쟁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 질 것이다.

한편, 법안 제정의 과정에서도 입법부의 많은 의원들이 유족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 주요한 것처럼, 앞으로 협의회에 유족이 참여함으로써 폭넓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블랙기업’으로 고통받는 당사자의 목소리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과로사방지대책법이 통과함으로써 과로사 등의 문제인식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다. 즉,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수행을 기화로 하여,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포착하는 세력이 등장하거나 상담사업이나 개발사업이 과로사 예방의 중요성을 해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는 근로자들이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만큼, 이러한 정보유출 또는 정보대등을 두려워 한 기업 관계자들이 협의회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을 바꾸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결국 이 법의 성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달려있고, 거기에는 다수의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V. 마치며

과로사방지대책법은 긴 시간동안 일본사회의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인식이 법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로사라 인과 같은 과로의 기준을 제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나 법제정을 요구한 것은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받은 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을 넘어서서, 법이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및 일반 국민에 대해서까지 과로사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고 일정한 책무를 부여

한 것은 근로환경 등에 대한 진일보한 상황을 법적으로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규정하는 등 과중노동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¹⁰⁾

일본의 법적 상황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로사 등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며, 국가나 사업주의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고 있지 못하다. 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상의 판단에만 그치고 있다.¹¹⁾

우리나라는 일본 과로사방지대책법의 근간이 되었던 ‘과로사라인’과 같은 과로의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주는 과로사 등의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 종 권

(중앙대학교 강사)

10) 교토통신 2014. 6. 21. “과로사 방지대책법안 성립...올해 11월부터 추진”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4/06/092067.html).

11) 남근욱, “과로사 인정 기준”, 영남법학 제12집 제1호, 2006, 118~125면.

참고문헌

川村遼平, “〈きすぎ〉の基準はえられる…過 死等防止 策推進法は完璧か 期待外れか”, 2014.6.21.

남근욱, “과로사 인정 기준”, 영남법학 제12집 제1호, 2006.

이흥재, “과로사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1집 제4호, 2001.

한광수, “산재보험법상 과로사 인정기준과 범위”, 노동법논총 제17집, 2009.

홍중학, “한국, 최악의 근로환경 속에서 신음 중”, 국회의원 홍중학 의원실 제공, 2014.4.1.

일본전자정부 법령정보제공: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index.html>.

교토통신: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4/06/092067.html.